

세무사 / 행정사 / 경영지도사 / 가맹거래사

허 성 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사항

# CONTENTS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2.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
3. 간이과세자 납부금액 면제 상향
4. 과세표준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6. 기타경감세액 관련 유의사항
7.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유의사항
8.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각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확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1) 법인사업자

구 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확정신고 납부기한
제1기 확정신고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26일(월)까지

## (2) 개인사업자

구 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확정신고 납부기한
제1기 확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26일(월)까지

#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3) 일반환급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일반환급은 과세기간 단위로 하므로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액이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한 사업자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4) 조기환급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환급절차에 불구하고 해당 환급세액을 각 과세기간 또는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각 신고기한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할 수 있다.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② 사업설비(건물·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시설투자
- ③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및 특별약정을 이행중인 사업자)
  - ☞ 국세청에서는 사전안내사항으로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5) 납기연장신청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1.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적용종료)

## (1)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 (사업자 기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합산

## (2) 감면세액 계산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을 말한다.

## 2.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

### (2) 감면세액 계산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 도매, 음식점업	10%
3. 농·임·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20%	4. 건설,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

### (3)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간이과세자 납부금액 면제 상황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연 매출액)이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 미만,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이 아닌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면제합니다.

\* 사업장별로 기준금액 적용(감면배제업종 겸업 사업자 안분계산)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1) 세금계산서 발급분

-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상 공급가액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고정거래처와의 거래 또는 임대료 등이 누락여부를 확인.
  - ☞ 6월에 고액거래가 발생한 경우 근거 확인,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존재여부 확인.
- ② 법인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합계표에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1) 세금계산서 발급분

#### ♣ 공급시기

##### (1)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 ②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2)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이 기간 내에 계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한다.

[계약금+분할지급(=2회이상)]→최소 3회이상 분할지급(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1) 세금계산서 발급분

#### ♣ 공급시기

(3) 완성도기준지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하는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 그 진행도 또는 완성진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완성도 기준지급에서 완성후의 공급시기는 있을  
수 없다.(예 : 완성(준공)후 1월 이내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 → 완성(준공)일이 공급시기임)

- ① 재화의 제작기간이나 공사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6월 이  
내의 단기공급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 ② 완성도의 측정은 제작(공사) 시작부터 완성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완성시점 이후의 공급시기는 장기할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될 수 없다.
- ③ 다음의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 계약서에 대금지급방법이나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상 기성금 지급은 월 1회로 되어 있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  
한 경우
  - 계약서상 기성부분 확인절차 등을 명시하고 실제로는 기성고를 확인하지 아  
니하여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1/31 기성확정되고 기성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조건

- ① 2/5 대가가 지급된 경우 지급받는 2/5이 공급시기
- ② 2/15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10일 되는 날인 2/10이 공급시기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①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② 매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니다. 즉 수기로 발행을 해야 한다.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계산서)와 신용카드가 이중으로 결재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중복으로 표시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매출(40,000,000원) 중 세금계산서 중복 부분 10,000,000원  
 현금영수증 매출(15,000,000원) 중 세금계산서 중복부분 5,000,000원

###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

구분	⑤합계	⑥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⑦현금영수증
합계		40,000,000	20,000,000
과세 매출분		40,000,000	20,000,000
면세 매출분			

###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발급내역

⑧세금계산서 발급금액	15,000,000	⑨계산서 발급금액	
----------------	------------	--------------	--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②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으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이중으로 결제된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상 자동으로 세금계산서와 중복으로 표시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반영함에 유의해야 한다.

♣ 실무해석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여부 : 자동차 부품 보험수리용역의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영과-646] , 2018.05.11}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 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금 중 「보 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한 것임

- ☞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로 보아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령하 는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 하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③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체금액을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여 하고 간주임대료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과세표준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2019.1.1. 이후 2.1%)

---

365(윤년일 때 366)

- ②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안분계산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 홈택스에서는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검증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하여 수입금액 불일치 오류 발생시 메시지 제공 및 신고서 제출 불가 안내메시지가 발생합니다.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 ♣ 부동산 임대 관련 주요 이슈

##### ① 월세와 함께 수령하는 공공요금의 처리

임대료와 함께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통칙 13- 48 - 3)

##### ② 분양 중 미리 수령하는 보증금의 처리

임대보증금을 상가 신축중 등에 먼저 받은 경우는 이를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간주임대료 계산시점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통칙 13 - 49의2 - 1 )

##### ③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가액은 임차인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결된 날을 종료일로 합니다.( 부가46015-1118, 2000.05.20)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 ♣ 부동산 임대 관련 주요 이슈

④ 월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차감처리가 가능 여부  
월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가액만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⑤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550[부가가치세과-628], 2020.04.03)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 ③ 비사업자로부터 신고관련 수수료로서 수령한 현금 또는 계좌이체금액의 신고여부, 개인사업자의 순수현금매출, 지역화폐 매출 중 현금부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 간주공급 관련 정리

- 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공급가액을 반영해야 하며 관련 회계처리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타계정대체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사례 - 거래처에 제품을 무상 증정 (원가 100 , 시가 150원 )

(차) 접대비	115	(대) 제	품	100	(적요 : 타계정 대체)
			부가세예수금	15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 ♣ 간주공급 관련 정리

#### ②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및 회계처리

(1) 비상각자산 - 시가

(2) 상각자산 - 의제시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구분	2001.12.31 이전 취득분	2002.1.1 이후 취득분
건물·구축물	10%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자산을 간주공급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기초취득·기초공급 간주)

\*\* 건물은 10년, 이외의 자산은 2년 경과하면 의제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세금과공과 100 (대) 부가세예수금 100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 ♣ 간주공급 관련 정리

##### ③ 사례

사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동산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 때에는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으로 과세한다.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5) 영세율 관련

①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금액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 상 공급가액 금액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관련 사항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내 사후발급된 경우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 사후발급된 경우
공급시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10% 세금계산서 발급
사후발급시	-	당초 발급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분 취소 (10%) - 영세율 발급 (0%)

② 관련 부속서류는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입증서류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외국환입금증 등 관련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5) 영세율 관련

#### ④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부가령 28⑥)

-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즉, 대가를 어떻게 받는지 관계없이 수출물품을 배 또는 비행기에 실은 날이 무조건 공급시기가 된다.
  - \*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 나타나며,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일은 세관수출신고일이고, 관세청 사이트상 일자는 출항일이므로 이 날짜를 적용하면 안됨
-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 또는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로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수출로 보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를 인도하는 때 (통칙 15-28-5)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5) 영세율 관련

#### ⑤ 과세표준의 계산

구분	외화환산액
공급시기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외화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과-1222, 2009.8.11)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 기준환율이란 미화(\$, 위엔)의 매매기준율을 말하며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를 통해서 조회가능하다.

#### ⑥ 가산세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영세율과 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 0.5% × 감면율)가 적용된다. 또한 조기환급 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6) 과세표준 계산시 유의사항

- ① 그 건물 등의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실제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구분		안분계산방법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①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②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6) 과세표준 계산시 유의사항

#### ♣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탈루한 사례

사업자 B는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세)과 토지(면세)를 일괄로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 건물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사업자를 추출한 후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상 정보를 통해 기준시가 비율을 계산하고
- 실지거래가액을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매매가액과 대사하여 30/100 이상 차이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함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6) 과세표준 계산시 유의사항

- ② 재화의 간주공급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text{감가상각자산 : 과세표준} = \text{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times (1 - \text{체감률}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체감률

구분	2001.12.31 이전 취득분	2002.1.1 이후 취득분
건물·구축물	10%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6) 과세표준 계산시 유의사항

㉞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산을 간주공급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기초취득·기초공급 간주)

### ③ 마일리지 관련한 사항

구분	과세표준	
자기적립마일리지	에누리 성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타인적립마일리지	타인 보전	저가로 보전받은 경우에는 받은대가+ 저가 보전액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재화·용역의 시가
	특수관계 보전	공급자의 재화·용역의 시가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7)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유의사항

- ①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대손사유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어음법·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상법 : 5년, 민법 : 3년, 통상 3년)  
☞ 중단사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청구, 승인(일부 회수)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와의 차액으로 한다.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7)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유의사항

- 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거래처 폐업과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완성 전이라도 거래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사유에서 2013.2월에 삭제되었지만 결손처분일자에 대손사유를 사업폐지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7)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유의사항

- 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등
- ☞ 부도발생일이란 당해 부도어음·수표의 지급기일을 말하되, 지급기일 전에 당해 어음·수표를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

부도발생일	공제가능일
직전연도 6.30 ~ 12.29	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
직전연도 12.30 ~ 당해연도 6.29	2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7)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유의사항

-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 ‘회수기일’이 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 등 객관적인 관계서류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어야 함.
  
-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text{대손세액} = \text{대손금액} \times \frac{10}{110}$$

##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7)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유의사항

- ④ 다음의 입증서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파산종결문, 채권배분계산서
  - ㉡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 ㉢ 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어음(원본제시)
  -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무자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 대금의 청구내역 등)
  - ㉦ 기타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1) 세금계산서 수취분

-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세액과 매입세액 금액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고정자산 매입금액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재고자산 또는 임차료 등이 포함되었는지 검토

#### ♣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1) 공급자 -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서면부가2017-839(2017.09.2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2) 공급받는 자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2015.02.27.]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상당3탐-1784, 2007.06.20.)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 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③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포함)→ 가산세는 적용함
- ④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 ⑥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48조 및 법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2013.2.15.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⑦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 사례연구 - 공급일 5.20.

유형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 2020.6.11 ~ 7.2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 2020.7.26 ~ 1.25
공급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공급가액×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공급가액× 2%)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적용(공급가액 × 0.5%)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지연수 취 가산세 적용(공급가액× 0.5%)

☞ 2018.12.31이전에는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수령 외에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매입세액불공제였지만 개정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 결정·경정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 ⑧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⑨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당사자가 법 제 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⑩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3) 선발급세금계산서 인정요건 개정(부법 제17조 3항 2호)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부법 제17조 3항 1호)

예) 발급일 6.20, 지급시기 7.20, 지급일 7.20 → 인정( 시기 30일 이내, 30일 이내 대가 받음)

예) 발급일 6.20, 지급시기 7.20, 지급일 7.30 → 불인정( 30일 이내 지급받지 않음)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3) 선발급세금계산서 인정요건 개정(부법 제17조 3항 2호)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제17조 3항 2호).

♣ 2019.1.1.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예) 발급일 3.31, 지급일 6.30, 공급시기 6.30 →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예) 발급일 3.31, 지급일 6.30, 공급시기 7.31 → 불인정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미도래)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이중공제 신고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전표를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 매입세액공제요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 ③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대상인 미용·육탕·유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닐 것

#### ㉠ 미용·육탕·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예 : 항공기, 고속버스, ktx요금, 새마을(면세)

㉢ 입장권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예 : 극장관람권 등

㉣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2.2.2.공급분부터)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2012.2.2.공급분부터)

㉥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2012.2.2.공급분부터)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명세서 입력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 "신용카드번호 0000은 다른 사업자도 공제받기 위해 입력한 카드입니다" 제공합니다.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5) 의제매입세액공제

- 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 ☞ 제조업 이외의 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5) 의제매입세액공제

#### ② 세액공제액

의제매입세액공제액=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공제율  
(한도 :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

㉠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업자 : 102분의 2

㉡ ㉠외의 음식점업자 : 106분의 6[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12.31. 까지 9/109)]

㉢ 제조업자(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 : 104분의 4

㉣ 제조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 106분의 6

㉤ ㉠, ㉡, ㉢, ㉣이외의 사업자 : 102분의 2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5) 의제매입세액공제

#### ③ 한도액

확정신고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는 차량 등 관련 자산 처분 가액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구분	과세표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원칙	<예외> 음식업
개인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55%	과세표준의 6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55%	과세표준의 60%
	2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45%	과세표준의 50%
법인		과세표준의 40%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및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 ② 적용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포함)와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 ③ 공제대상사업자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 ㉢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 제조업의 경우는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 ④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  $\times \frac{3}{103}$

㉡ 한도: 예정신고시 전액 공제 후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과세표준  $\times 80\%$  - 세금계산서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액 제외) ]

㉢ 중고자동차취득가액  $\times \frac{10}{110}$ , 한도규정 없음.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 ⑤ 부당공제 유형

- ㉠ 사망자, 노숙자, 해외 이주자 등으로 매입하여 부당공제받은 경우
  - ㉡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은 경우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개인으로부터 운행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재부 부가 -662, 2009.9.29.)
  - ㉤ 중고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서면3팀-2962, 2006.11.30.)
- ☞ 중고자동차의 경우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라도 가사용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구입 및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국심 2003구2833, 2004.2.27)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① 매입세액불공제 사항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매입세액불공제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 제외]를 구입·임차·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 지프형이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VAN형 차량, 화물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예 : 모닝,레이,레이EV,스파크, 9인승 카니발, 트럭 등)
-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차량에 대한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의 유지비용 매입세액공제 가능.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인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542, 2014.6.5. 외)
- ☞ 유료도로 통행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서면3팀, -1553, 2005.9.16.)

㉞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㉔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㉕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㉖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취득→철거)

· 기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하는 경우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가능함

㉗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지, 택지의 조성(절토, 유용성토, 잔토정리)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불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포장도로) ⇒ 매입세액공제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7)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 1) 공통매입세액 정산- 확정신고시(1-6월 기준)

- ㉠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text{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text{총공통매입세액} \times \left(1 - \frac{\text{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text{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right) - \text{기공제세액}$$

- ㉡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실제사용면적 비율로 정산한다.

$$\text{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text{총공통매입세액} \times \left(1 - \frac{\text{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text{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right) - \text{기공제세액}$$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7)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사례 : ㉠ 상가분양사업자의 분양대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일반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건설업의 공통경비 등)

###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하는 경우 -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공통매입세액을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비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계산을 생략하지 아니한다.(집행기준 40-81-5㉤ 재경원 소비 46015-229, 1996.8.5)

㉣ 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7)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 ㉔ 해당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재화의 매입세액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8) 납부세액 재계산 관련 유의사항

#### 1) 요건

- ①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일 것
- ② 당초 안분계산의 대상인 매입세액일 것
- ③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일 것

#### 2) 재계산

- ① 건물 또는 구축물

$$\text{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text{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times \left(1 - \frac{5}{100}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의 수}\right) \times \text{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5. 매입세액 계산과 관련 유의사항

### (8) 납부세액 재계산 관련 유의사항

####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text{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text{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times \left(1 - \frac{25}{100}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의 수}\right) \times \text{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면세물품의 매출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납부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되지 아니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453,1997.06.28.)

## 6. 기타경감세액 관련 유의사항

###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이 신용카드매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6%/2021.7.1이후 분부터는 1.3%)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함)

- ☞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10억원 초과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정한다.
- ☞ 영수증 발급의무자만 공제대상이므로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예정신고 시 재고과다 등으로 일반환급을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을 기재한다. 이 경우 고정자산 취득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 환급 여부를 사업자가 통보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하여 조기환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한다.

- ☞ 예정신고 시 환급신고 세액을 실제 환급 받았으나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기타경감세액 관련 유의사항

### (3) 예정고지세액

당해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가산금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휴업·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된 경우가 있으므로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

### (4)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양도자 입장)

사업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 6. 기타경감세액 관련 유의사항

### (5)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① 금지금·금제품 및 구리 스크랩, 철 스크랩의 투명화·정상화를 통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무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여, 매입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 ②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다.
  - ③ 금 관련 제품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미입금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실가산세 부과한다.
- ☞ 국세청에서는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이 한쪽만 존재하거나, 한쪽 거래만 과다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비교 분석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와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6. 기타경감세액 관련 유의사항

### (5)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 구리(철)스크랩 매출 1,000(세액 100원)만 있는 경우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매입자납부 특례 기납부	납부할 세액
100	0	100	100	0

2) 구리(철)스크랩 매출 1,000(세액 100원), 매입 700(세액 70원) 의 경우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매입자납부 특례 기납부	납부할 세액
100	70	30	30	0

→ 실시간환급세액 70원(매출세액을 한도로 함), 매입자납부기납부특례 없음.

## 6. 기타경감세액 관련 유의사항

### (5)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3) 구리(철)스크랩 매출 700(세액 100원),매입 1,000(세액 100원) 의 경우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매입자납부 특례 기납부	납부할 세액
70	100	△30	0	△30

→ 실시간환급세액 70원(매출세액을 한도로 함), 매입자납부기납부특례 없음.

4) 구리(철)스크랩 매출 1,000(세액 100원), 매입 700(세액 70원) 의 경우

- 구리(철): 매출 10,000(세액 1,000원), 매입 5,000(세액 500원) 의 경우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매입자납부 특례 기납부	납부할 세액
2,500	1,500	1,000	500	500

→ 실시간환급세액 500원(구리(철) 매출세액을 한도로 함)



## 6. 기타경감세액 관련 유의사항

### (5)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5) 구리(철)스크랩 거래와 일반거래가 동시에 존재시

- 구리(철): 매출 5,000(세액 500원), 매입 15,000(세액 1,500원) 의 경우

- 일반: 매출 15,000(세액 1,500원), 매입 10,000(세액 1,000원) 의 경우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매입자납부 특례 기납부	납부할 세액
2,000	2,500	△500	0	△500

→ 실시간환급세액 500원(구리(철) 매출세액을 한도로 함), 매입자납부기납부특례 없음.

### (6) 가산세액

#### 1) 예정신고누락분 반영 시 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6. 기타경감세액 관련 유의사항

### (6) 가산세액

####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미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제출기한이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함.	공급가액 × 0.5%
부실기재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착오는 제외	공급가액 × 0.5%
지연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공급가액 × 0.3%

#### 3)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10%(무신고 : 20%) × 감면율
- ②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2.5/10,000 × 지연일수(법정신고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까지)

## 6. 기타경감세액 관련 유의사항

### (6) 가산세액

③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서류미제출 공급가액 × 0.5% × 감면율

\* 감면율 - 수정신고시

기간	1개월 이내	2~3개월 이내	4~6개월 이내	7~12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2년 이내
감면율	90%	75%	50%	30%	20%	10%

###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공급시기 오류	공급가액×0.5%
②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경정 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0.5%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받아 합계표에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 : 공급가액과다수취가산세 2% 적용

## 6. 기타경감세액 관련 유의사항

### (6) 가산세액

#### ♣ 본& 지점 거래세 세금계산서 관련 유의사항-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과 관련하여는 본점에서 계약을 하고 대금 지급 및 거래관계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매출의 경우에는 본점에서 계약과 대금수령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지점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본점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점은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본점에서 신고납부시에는 제외됨),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 거래처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대상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58-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서면3팀-1818, 2007.06.26)

## 6. 기타경감세액 관련 유의사항

### (7)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1) 국세환급금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2) 과세표준명세

- ① 법인, 개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직매장공급, 선수금 등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함에 유의하여야 함
- ②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고정자산매각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수입금액 제외란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7.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유의사항

### (1)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④ 그 밖에 ①~③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70조①-6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60조②-1 및 ⑦-1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538, 2014.09.05.).

## 7.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유의사항

### (3) 발급기한

아래의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구분	발급기한
환입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계약의 해제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내국신용장 개설 다음달 10일 (단,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는 25일까지 발급)

## 8.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 공급자

구분	관련 내용	가산세율
지연발급	<p>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지난 후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p> <p>예) 7.10. 거래를 8.11.~ 1.25.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p> <p>☞ 6월 거래분을 7.10.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특례규정에 의해 정상임.</p>	<p>매출자 : 지연발급 (공급가액 × 1%)</p> <p>매입자 : 지연수취 (공급가액 × 0.5%)</p> <p>* 매입세액공제는 가능</p>
미발급	<p>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p> <p>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p> <p>예) 3.10. 거래를 7.25.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p>	<p>매출자 : (공급가액 × 1%)</p> <p>매입자 : 없음 + 매입세액불공제</p>
미발급	<p>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발급시기에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p>	<p>매출자 : (공급가액 × 1%)</p> <p>매입자 : 없음 + 매입세액공제</p>



## 8.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2) 공급받는 자

구분	관련 내용	가산세율
지연수취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을 지난 후 동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0.5% (매입세액공제는 가능)
지연수취 *2019.2.12 이후 공급분부 터 적용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0.5% (매입세액공제는 가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0.5% (매입세액공제는 가능)
매입세액불공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불공제

세무사 / 행정사 / 경영지도사 / 가맹거래사

허 성 호

THANK YOU